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1. 29. 정희용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2.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3차 전체회의(2025. 2.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희용의원)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명호)

□ 개정안은 업무집행지시자, 회계업무 담당 임직원, 감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이하 “허위재무제표작성죄”) 감사인·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이하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한 벌금형의 최저상한액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한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5조 및 제6조[1]),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8조[2]).

□ 한편, 같은 법 제39조제1항[3]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

작성죄(이하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감사보고서의 진실성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4)]

□ 그런데,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에 대한 벌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

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2025년말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하였음.[5)]

□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최저상한액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배수벌금형 최저상한액 수준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정 최저상한액의 수준에 대하여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6)]에 처하도록 하면서, 배수벌금형 최저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7)]

---

5)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주문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가운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입법자는 위 법률조항 부분을 2025. 12. 31.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6) 2024년 10월 벌금의 수준이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4308)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31일 시행 예정임.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없음